

● 제303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569)

2021. 12.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정진술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69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경위**

- 가. 제출자 : 정진술 의원 외 17인
- 나. 제출일자 : 2021년 8월 10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난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난임극복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지원사업 종사자에 대한 비밀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규정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자 발의되었음.
- 조례안은 12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조례의 목적(안 제1조)은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이며, 정의규정(안 제2조)에서는 난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시장의 책무(안 제3조)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등의 노력을 명시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지원대상(안 제5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안 제6조)와 지원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안 제7조), 사무의 위탁(안 제8조), 지원 중단(안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시행규칙(안 제12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조례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7조(지원사업)
제2조(정의)	제8조(사무의 위탁)
제3조(시장의 책무)	제9조(지원 중단)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지원대상)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실태조사 등)	제12조(시행규칙)
	부 칙

## 2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총칙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본 조례안은 총칙 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과 정의(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추진과 재원 확보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sup>1)</sup>으로, 동 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관련 시책 마련 등의 책임을 규정<sup>2)</sup>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목적은 상위법령에 부합한다 할 것임.
- 또한, 동 법 제2조(정의)에서 지원대상인 “난임”에 대한 정의를 규정<sup>3)</sup>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난임”의 정의는 상

---

1)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

위법과 동일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겠음.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조례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조례를 따른다고 명시하는데, 현재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별도 조례는 없는 상황임.

#### 다. 난임극복 지원대상,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5조 ~ 안 제7조)

- 먼저, 본 조례안 제5조(지원대상)에서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난임부부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에 위임하였음.
- 참고로 집행부는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음<sup>4)</sup>.
  -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횡수 소진 난임 여성이며, 소득기준의 제한 없이 1회 신선배아 18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함.
-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등)에서는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제11조6(통계관리 등)<sup>5)</sup>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

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서울특별시(2021) 2021년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계획.

따른 관련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임.

- 또한, 서울시 시민건강국(2021)의 난임 관련 사업계획서<sup>6)</sup>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등을 통해 난임현황,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정보 등을 사업추진 배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7조(지원사업)는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난임 관련 진단 및 검사비 지원, 시술비 지원, 교육·정보 제공 및 관련 상담 지원 등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제11조에서 규정<sup>7)</sup>하고 있는 지원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여 지며, 보건소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겠음.

- 
- 5) 「모자보건법」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 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3. 난임의 원인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6) 서울특별시(2021) 2021년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계획.
- 7)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2.>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또한,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제1항에서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동 조례안 제7조(지원사업)제2항에 따른 난임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라. 사무의 위탁(안 제8조)

- 조례안 제8조(사무의 위탁)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제11조의4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sup>8)</sup>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업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임<sup>9)</sup>.

8)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2. ~ 3. <중략>.

4.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9) 「모자보건법」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

- 이외에 난임시술 등의 경우에도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모자보건사업 관련 시책 마련 등의 책임을 규정<sup>10)</sup>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임<sup>11)</sup>.

#### 마. 지원 중단 및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9조 ~ 안 제10조)

- 먼저, 조례안 제9조(지원 중단)에서는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를 포함하여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명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또한,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sup>12)</sup>에서도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 또는 공표하여선 아니 된다 하고 있어, 본

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제4항에 따른 위탁,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 10)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9. 1. 7.]
- 1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12) 「지방자치법」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9. 1. 7.]



조례안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는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하겠음.

####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조례안 제11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임.
- 서울시(2021)의 난임 관련 사업계획서<sup>13)</sup>를 보면, 자치구 보건소,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외에도, 서울시 소재 한의원(2020년 기준 215개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3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조례안은 12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시가 난임극복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난임원인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경우, 상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등을 통해 관련 실태를 사업추진 배경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서울시 자체 난임관련 실태조사의 추진 필요성은 검토가 필요해보임.
- 그 밖에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과

13) 서울특별시(2021) 2021년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계획.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무의 위탁 등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책 마련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

우현재 입법조사관 (02-2180-8155)
--------------------------